

농업인이 실천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?

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실천

- ✓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아래의 준수사항을 실천하여야 합니다.

분야	준수사항
환경	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
	비료 적정 보관·관리
	가축분뇨 퇴비·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
	공공수역 농약·가축분뇨 배출금지
	하천수 이용기준 준수
생태	지하수 이용기준 준수
	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
	생태교란 생물의 반입·사육·재배 금지
공동체	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
	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
먹거리 안전	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
	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
	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
제도 기반	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
	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
	농업·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
	경영체 등록·변경 신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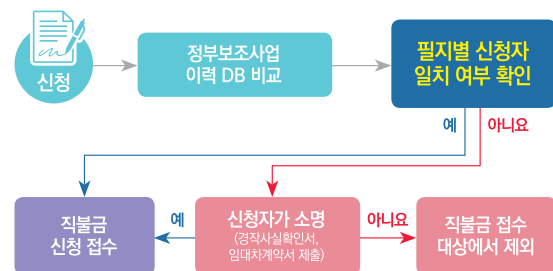
*준수사항 미이행 시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% 감액

신청은 꼼꼼하게, 수령은 당당하게

- ✓ 실제 농사짓는 사람만 신청합니다.
- ✓ 실제 관리하는 농지만 신청합니다.

직불금 부정수급 여부,
사후 점검에서 사전 점검으로
전환합니다.

- ✓ 보조사업 이력 정보를 사전 비교, 동일 농지에 수급자가 다른 경우 신청자가 소명해야 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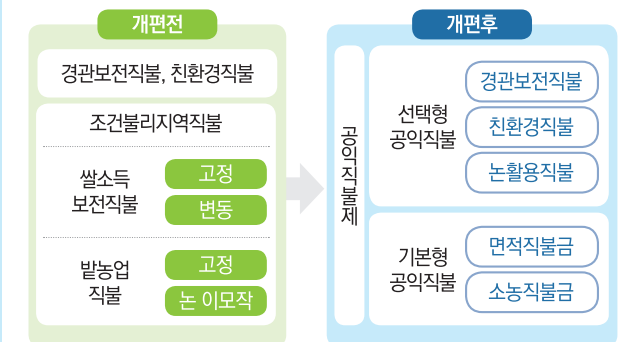
농업농촌공익직불제 5월 1일 시행

공익직불제 따라잡기



공익직불제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요?

- ✓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, 농촌 공동체 유지,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✓ 그동안 쌀직불, 밭직불, 조건불리직불 등으로 분리해서 직불금을 수령했으나 이제는 '기본형공익직불제'로 통합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 - 친환경직불, 경관보전직불, 논활용직불은 기본형공익직불제에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
- ✓ 2020년 공익직불 사업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044-201-1781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54-429-4000
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 사무소

이 자료는 2.21.~4.1. 까지 입법예고 중인
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·시행규칙 안을 바탕으로 함



기본직불금 지급대상

1
단계

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지
확인합시다!

대상 농지

- ✓ 종전의 쌀·밭·조건불리직불의 대상 농지에 대해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합니다.
- ✓ 다만, '17~'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.

대상 농업인

- ✓ 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기존 수령자	'16~'19년 중 직불금(쌀·밭·조건불리) 1회 이상 수령자
신규 농업인	후계농업인,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.1ha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

* 다만, 농촌 외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

- ✓ 다만, 아래의 농업인들에게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,700만원 이상인 자
- 논·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.1ha 미만인 자
-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
(다만, 매매·증여·상속, 임대차계약종료 등의 사유로
신청자가 정당한 감소임을 증명할 경우에는 지급 가능)

대상 농지와 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
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신청할 수
있습니다.

소규모농가 직불금

2
단계

소규모농가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시다!
(소농직불금)

농가 범위

- ✓ 소농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 없이
연 120만원을 지급합니다.
- ✓ 농가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를 의미합니다.
 - 다만,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,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, 혼인
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봅니다.

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 동일세대원으로 봅니다.

- * 직장, 자녀 학업 등으로 세대 분리된 배우자
- * 학교 진학 등으로 세대 분리된 미혼인 19세미만 자녀
- * 혼인 외 사유로 2년 전 세대 분리한 자녀



소농 요건

- ✓ 아래 ①~⑦까지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소농직불금을
받을 수 있습니다.



- ①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면적 합이
0.5ha 이하이어야 함



- ② 농가 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까지 포함한
전체 구성원의 소유농지(임대해준 농지 포함)
면적 합이 1.55ha 미만이어야 함



- ③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이 등록신청 연도
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함
→ 2020년의 경우 농가 내
모든 농업인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
계속해서 농사를 지었어야 함



- ④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이 등록신청 연도
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촌지역에
거주하여야 함
→ 2020년의 경우 농가 내
모든 농업인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
계속해서 농촌지역에 거주하였어야 함



- ⑤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농업 외 소득이
2천만원 미만이어야 함



- ⑥ 농가 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까지 포함한
전체 구성원의 농업 외 소득의 합이 4,500만원
미만이어야 함



- ⑦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
5,600만원 미만이고, 시설재배업 소득이
3,800만원 미만이어야 함

면적직불금

3
단계

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닐 경우,
면적직불금을 받습니다.

- ✓ 면적직불금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면적에 따라 지급
됩니다.

소농직불금 :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
연 120만원 지급

면적직불금 : 농업인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지급

- ✓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면적구간별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
정할 계획입니다.
- 면적구간은 2ha 이하, 2ha 초과~6ha 이하, 6ha 초과~30ha
이하로 구분됩니다.
- 「농업진흥지역 내 논·밭-농업진흥지역 밖의 논-농업진흥지역
밖의 밭」으로 각각 구분하여 지급단가를 달리 정합니다.
- 구간별 지급단가는 논·밭 모두 최소 ha당 100만원 이상으로
지급할 계획입니다.

- ✓ 지급 상한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.

	농업인	농업법인	들녘 경영체
공익직불제 (논·밭 합산)	30ha * 30ha 초과시 '19년 직불금 수령 면적에 한해 인정	50ha * 50ha 초과시 '19년 직불금 수령 면적에 한해 인정	400ha

